관세청 공고 제2026 - 89호
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(2차)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,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(2차, HS10단위 기준 9개) 및 집중관리 품목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29.

관 세 청 장

할당관세품목	상세품명및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냉동돼지고기	기타	0203.29-9000	2026.5.29.~ 2026.12.31.
닭고기	미절단육(냉동)	0207.12-0000	2026.5.29.~ 2026.7.31.
	다리(냉동)	0207.14-1010	
	가슴(냉동)	0207.14-1020	
	날개(냉동)	0207.14-1030	
	기타 절단육	0207.14-1090	
	기타 설육	0207.14-2090	
	기타(밀폐용기에 넣은 것)	1602.32-1090	
	기타(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)	1602.32-9000	